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출년월일 : 2008년 월 일
제 출 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 공공하수도 영역을 주로 담당하던 기존의「하수도법」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관리되던 오수·분뇨를 통합하는 내용의「하수도법」이 전부개정(법률 제8014호, 2006.9.27. 공포) 되어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된 상위법 체계와 규정에 부합하도록 현행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를 전부개정 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하수처리구역 지정 기준 신설(안 제2조)**

- 하수처리구역을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이내로 지정하도록 하여 관거로부터 너무 먼 위치에 배수설비를 설치할 경우 발생 할 수 있는 고비용, 저효율 방지(하수도법 시행규칙 제7조)

○ **하수관거 준설 강화 (안 제5조)**

- 기존 조례에는 하수관거 청소 및 준설을 2년에 1회 이상 수행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조례에서는 매년 1회 이상으로 의무화 하여 재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대처

○ **원인자부담금 부과 대상 조정 (안 제19조)**

- 1일 10㎥ 이상의 하수를 새로이 배출하거나 증가시키는 자에게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여 주민 부담 경감 (하수도법 61조)
 (기존에는 1㎥ 이상을 배출하거나 증가될 경우에 부과)

○ **가산금 요율 인하 및 중가산금 폐지 (안 제24조)**

- 가산금 5%에서 3%로 인하, 중가산금 폐지

○ **분뇨 관련 업무 조항 신설 (안 제26조 내지 29조)**

-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중 오수·분뇨가 「하수도법」에 통합되어 관리됨에 따라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에도 오수·분뇨 관련 업무 조항을 신설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하수도법」

나. 예산관련사항 : 해당없음

다. 기　　타

1) 전부개정조례안 :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성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하수도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법 제15조 및 규칙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처리구역 지정은 공공하수도(하수관거를 말한다)로부터 300m 이내로 한다.

제3조(사용개시 등의 신고) ①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하고 공공하수도를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성주군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이하 "조례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배수설비의 사용을 개시·중지·폐지하거나 중지중에 있던 것을 다시 사용할 때
2. 지하수・하천수・온천수・해수・기타 상수도 급수에 의하지 아니하는 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
3.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때
4. 기타 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의 업종이 달라졌을 때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 등의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성주군수도급수조례」의 규정에 의한 급수사용개시신고
2. 제11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한 경우
3.「지하수법」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 및 지하수개발・이용의 신고
4.「하수도법」제27조제4항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제4조(일시사용신고) 토목공사 또는 건축공사, 기타의 사유로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하수관거 준설 등) ①군수는 하수관거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하수관거 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하수관거의 청소 및 준설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침수·장마 등 재해발생 방지 또는 하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청소 및 준설을 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 시설 등의 원상복구)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설치한 시설 또는 공작물 등을 철거하고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원상으로 복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중수도의 설치신고 및 확인) ①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구비하여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사용계획서
2. 처리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3. 중수도 시설용량의 산출근거를 기재한 서류
4.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②군수는 제1항의 신고를 받은 경우 시설을 확인하여 중수도로 인정되는 시설분에 대해서 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중수도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중수도 시설의 확장계획
2. 중수도 시설의 운전중지
3. 사업자 또는 관리자 변경

④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하여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 받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을 준용한다.

⑤군수는 신고사항 및 중수도 시설사항 등을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중수도의 관리) 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중수도의 관리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저수조는 수량 부족에 대비하여 수돗물에 의한 보급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중수가 수돗물과 혼합되지 않는 구조로 할 것
2. 송·배수시설은 수도, 전기, 기타 배관과 구별될 수 있도록 할 것
3. 이용설비에 “중수도 사용”이라는 표지를 할 것
4. 중수도의 운전기록 및 수질검사 등의 관련 서류를 기록·보관 할 것

제9조(중수도의 용도제한) 중수도의 용도는 수세식 변소용수, 살수용수, 조경용수, 세차・청소용수 등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중수도의 수질검사) ①중수도를 설치한 사업자 또는 관리자는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질검사의 횟수는 PH, 냄새, 색도, 탁도, 외관 및 잔류염소(결합)에 대하여는 매주 1회 이상,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 화학적 산소요구량 및 대장균군수에 대하여는 매월 1회 이상으로 한다.

③채수장소는 중수도를 사용하는 장소로 한다.

제11조(공사시행) ①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수 설비의 설치・변경 또는 폐지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1. 도로공사 등 시행과 연계하여 배수설비 공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내용과 다르게 설치되었거나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기준 및 구조기준에 위배하여 설치된 배수설비에 대하여 개선명령 하였으나, 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배수설비설치자로부터 공사시행 요청이 있을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그 공사비용을 배수설비 설치자가 부담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지장물 이전비, 도로의 복구비, 일반행정관리비 등 공사에 소요되는 총 비용으로 한다.

④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설치의무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⑤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비용은 공사비의 개산액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배수설비 준공검사) ①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수설비 설치 의무자가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에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건축법」 제2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이 필요한 경우 배수설비준공검사신청서를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시 함께 제출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법 제27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의 신고사항과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설치기준 및 그 구조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를 검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할 때 배수설비를 설치한 사업자에게 연막, 염료, CCTV 등을 이용하여 배수설비가 적정하게 설치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배수설비의 유지·관리) 법 제27조제6항의 규정에 따른 배수설비의 유지·관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배수설비 설치자는 하수가 공공하수도로 유입되도록 하여야 하며 당해 배수설비로 인해서 공공하수도의 기능장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군수는 필요한 경우 하수가 발생하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공공하수도에 연결된 부분까지의 배수설비를 유지·관리할 수 있다.

제14조(공공하수도 사용료)①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 공고된 하수처리구역 중 지방상수도 및 광역상수도 급수지역을 대상으로 징수한다.

②공공하수도사용료는 공공하수도로 배출하는 하수의 양과 업종에 따라 별표1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부과·징수 한다.

③「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배출허용기준이 고시된 지역의 경우 군수는 별표 1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외에 별표2에 의한 수질하수도사용료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공공하수도 사용료의 납기와 징수방법) ①공공하수도의 사용료는 상수도 급수 사용료와 납기를 같이하며, 수도요금고지서에 함께 고지하여 동시에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법을 따로 정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는 경우의 하수도 사용료는 신고신청서에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하며, 그 사용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정산하여 환불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공하수도의 사용신고기간이 2개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2개월마다 2월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추산하여 선납토록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의 사용료를 징수할 경우 군의 수도사용료 징수업무처리부서에 위탁하여 징수하고, 위탁경비부담금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협의에 의하여 부담한다.

⑤계측기의 고장으로 인하여 사용료 부과가 불가능한 경우 부과당월기준 이전 3월분을 평균하여 부과·징수한다.

제16조(하수배출량의 산정)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를 위한 하수배출량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

1.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전용상수도사용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2.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가 아닌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신고 된 양을 군의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의하여 확정한다.

가.「지하수법」제7조 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하수 이용량

나. 하천수, 온천수, 해수 기타의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다. 물의 사용량과 하수의 배출량이 현저히 다를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고량

3.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상수도사용자이면서 지하수 등을 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수도급수량과 지하수 등의 사용량을 합산한 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본다.

제17조(하수배출량의 조사) ①군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인정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하거나 공공하수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배출되는 하수의 양 또는 질을 직접 조사하게 하거나 조사를 위하여 계측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사용자가 하수 배출량을 입증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인기관의 검사를 받은 계측장치를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토록 할 수 있으며, 계측장치 설치 후 봉인은 군수가 한다.

②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설치된 계측 장치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제1항의 계측장치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계측장치의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었거나 자연고장 발생시에도 또한 같다. 이 경우의 하수배출량은 최근 6개월 중 최대치에 해당하는 월의 하수량을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하수의 양이 신고한 하수배출량과 다를 때에는 조사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하수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의2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동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
⑤계측장치 설치 후 설치장소에 계측기 점검 및 검침에 방해가 되는 물건의 적치, 공작물설치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제18조(공공하수도 점용료) ①군수는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하수도의 점용을 허가를 한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를 징수한다.
②점용료는 점용기간에 따라 산정한다.
③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실상 점용이 개시된 날부터 점용료를 산정하여 징수한다.
④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점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개별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오수발생량은 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2.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은 다음과 같이 산정하며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량 산정 예는 별표4와 같다.
가. 신축・증축・용도변경 등 각각의 행정행위로 인한 오수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전체오수발생량
나. 수회에 걸쳐 이루어지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의 행정행위로 오수 발생량이 10㎥/일 이상인 경우 10㎥/일을 초과하는 양
3. 건축물 등의 오수발생량은 해당 건축물 전체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건축물 소유자 별로 산정할 수 있다.
4. 오수발생량 ㎥/일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 5의 산정 방식에 따

라 산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원인자부담금의 금액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 오수발생량(㎥/일)에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단위단가(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6. 원인자부담금의 징수방법 및 시기 등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부과시기는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재축 및 건축물 용도변경 등에 대한 인허가시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 시행 규칙에서 정한다.

나. 징수(납부)시기는 건축 준공 허가전으로 하되, 건축물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는 인·허가 승인 전으로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에서 정한다.

②제21조의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지역 또는 원인자가 타행위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적정처리 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당해 지역 내 건축물의 신축·증축 및 용도변경 등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20조(타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 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타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은 타공사를 하는 자와 공공하수도관리청이 협의하여 산정한다.

③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타공사를 하는 자에게 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21조(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①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타행위"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에 의해 발생되는 하수량을 처리할 수 있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과 당해 지역에서 발생하는 하수를 공공하수도로 연결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의 전액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비용은 다음 각호와 같이 산정한 하수발생량에 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원/㎥/일)를 곱하여 산정한다.

1. 하수발생량 산정

가. 하수발생량은 타행위의 준공년도에 해당하는 성주군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하수발생량 원단위(타행위의 준공연도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 연도의 중간일 경우, 직선보간법으로 산정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나. 가목에 의한 하수발생량 산정시 타행위 지역안의 기존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하수량은 제외한다.

2. 하수발생량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단위단가는 별표5에 따라 산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수관거 설치비용은 타행위의 부지경계에서 기존 공공하수관거까지 하수를 유입시키기 위한 하수관거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비용으로 하며, 기존 공공하수관거의 용량이 부족한 경우 용량확대 등을 위한 비용을 추가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④원인자부담금은 타행위 개발계획 승인시 부과하고 준공전 납부토록 하되 분할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감면 등) 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사태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

2. 제7조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자

3.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수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자

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중수도 또는 재이용수 사용자에 대한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기준은 별표7과 같다.

제23조(이의신청) ①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분뇨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는「지방세법」제73조 및 제75조 내지 제7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조 (가산금 및 독촉) 군수는 공공하수도 사용료, 공공하수도 점용료,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중가산금은 징수하지 않는다.

제25조(권한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읍장 또는 면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설치신고 등의 접수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개시신고의 접수
3.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일시사용신고의 접수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 준공검사
5.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산정
6.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배출량의 조사

제26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 ①군수는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 영업자로 하여금 수집 운반 또는 청소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를 대행하게 하였을 때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대행업자가 대행기간 등 만료시 까지 특별한 흠이 없는 경우에는 대행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법 제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간을 해제할 수 있으며,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또는 정화조 청소의 효율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해지 3개월 전에 그 사실을 대행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는 법·령·시행규칙과 이 조례 등 관계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분뇨 및 정화조 등의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여야 한다.

⑦대행업자는 청소일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청소실적을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계약내용의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는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27조(분뇨 수집·운반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 ①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를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소수수료 및 분뇨처리수수료를 다음 각호와 같이 부과·징수한다.

1. 분뇨(오수처리시설·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징수한다.
2. 군수는 제26조 규정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수집·운반업자는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중 분뇨 처리에

관한 수수료는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수수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함이 곤란한 경우는 당해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 할 수 있다.

제28조(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 업무 위임위탁 등) ①군수는 법 제7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 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성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29조(분뇨 관련 업무 행정위탁) ①군수는 인접한 시·군 구역내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수집·운반 또는 청소요청 등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 협의에 따라 수집·운반과 정화조등의 청수수수료 및 분뇨처리수수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 할 수 있다.

제30조(조례시행규칙에의 위임)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성주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성주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조중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8조”로 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중가산금은 유효하며 이 조례 시행 이후부터는 중가산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대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대행계약을 체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대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처분 기준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2항)

1. 하수도 사용업종 구분

○ 하수도 사용업종은 「성주군수도급수조례」의 상수도 업종에 준한다.

○ 상기 업종에 사용한 물은 상수도, 지하수 및 기타 용수 등에 관계없이 해당 하수도업종을 적용한다.

○ 상기 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업종에 대하여는 해당 유사업종으로 분류 적용한다.

2. 하수도 사용료 산정기준

구분 / 업종	사용구분(㎥/월)	㎥당 단가(원)
가정용	20㎥이하	150
	21㎥이상~30㎥이하	160
	31㎥이상	180
일반용	50㎥이하	190
	51㎥이상~100㎥이하	220
	101㎥이상~300㎥이하	280
	301㎥이상~500㎥이하	340
	501㎥이상	580
대중탕용	300㎥이하	170
	301㎥이상~500㎥이하	210
	501㎥이상~700㎥이하	270
	701㎥이상	350
산업용	1㎥ 당	210

주 1. 상수도사용가는 상수도업종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외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단일시설 내에서 하수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분리가 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주된 하수가 발생하는 업종으로 구분하며, 주된 하수가 불분명할 경우 하수도사용 요율이 높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함

[별표 2]

수질하수도사용료 산정기준(제14조제3항)

□ 대상항목 : BOD 또는 COD, SS

□ 사용료 산정기준

○ 수질하수도사용료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5조의 배출허용기준 농도와 같은법 제32조제8항의 별도 배출허용기준 농도의 차이에 대하여 산정한다(같은법 시행령 제29조제1호)

○ BOD 또는 COD 값 중 큰 값을 적용하여야 하며, SS 값은 그대로 적용한다.

○ 폐수배출량은「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측정기기에 의거 산정한다.

□ 수질하수도사용료

○ 수질하수도사용료(원) = 오염부하량[수질초과농도(mg/L)×시간당 폐수배출량(㎥/시간)] × $\frac{1}{1000}$ (kg/g) × 1일조업시간(시간/일) × 30일 × kg단가(원/kg)

※ 1일 조업시간은 측정하기 전 배출시설의 최근 조업한 30일간의 조업시간 평균치를 적용한다.

[별표 3]

공공하수도 점용료 산정기준(제18조제1항)

(365일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1. 도로, 철도, 궤도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6
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물의 설치를 위한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3. 택지 또는 상가로 하는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10
4. 기타 사유로 인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의 100분의 8

주 1. 구분 및 산정기준은 시 또는 군별로 도로점용료, 하천점용료 등을 고려하여 특성에 맞게 조정할 것.

< 계산 예 >

1. 점용면적에 대한 인근 유사지의 과세지가 표준액이 100만원이고, 점용기간이 183일인 경우의 점용면적당 공공하수도 점용료는?

= 100(만원) × (6/100) × (183/365) = 3(만원)

[별표 4]

건축물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부과오수량 산정 예

(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오수량 : ㎥/일)

구 분	최초 행정행위시 오수발생량 (A)	1차 증축·용도변경				2차 증축·용도변경			
		증가량 (B)	총오수량 (C) (A+B)	부과량 (D)	적용방법	증가량 (E)	총오수량 (F) (C+E)	부과량 (G)	적용방법
기존 건축물의 증축 및 용도변경	0 ※기존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3	-	(B)<10 미부과	1	4	-	(B)+(E)<10 미부과
						6	9	-	
						12	15	12	(E)>10 전체부과
		7	7	-	(B)<10 미부과	2	9	-	(B)+(E)<10 미부과
						7	14	4	(B)+(E)>10 초과량부과
						11	18	11	(E)>10 전체부과
		11	11	11	(B)>10 전체부과	4	15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7	18	-	
						11	22	11	
법시행일 이후 신축 건축물	5 (미부과)	3	8	-	(A)+(B)<10 미부과	1	9	-	(A)+(B)+(E)<10 미부과
						7	15	5	A)+(B)+(E)>10 초과량부과
						12	20	12	(E)>10 전체부과
		7	12	2	(A)+(B)>10 초과량 부과	1	13	-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6	18	-	
						12	24	12	
		11	16	11	(B)>10 전체부과	1	17	-	
						6	22	-	
						12	28	12	
	10 (부과)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한 건축물 오수발생량은 0으로 봄	3	13	-	(B)<10 미부과	3	16	-	기존건축물과 같은 방식으로 원인자부담금 부과량 산정
						6	19	-	
						12	25	12	
		7	17	-	(B)<10 미부과	2	19	-	
						6	23	3	
						12	29	12	
		11	21	11	(B)>10 전체부과	2	23	-	
						6	27	-	
						12	33	12	

주) 1. 신축 또는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발생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 **미부과**

2. 수회에 걸쳐 신축+증축·용도변경 등으로 오수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초과량부과**

3. 각각의 신축·증축·용도변경 행위로 오수발생(증가)량이 10톤 이상인 경우 : **오수발생(증가)량 전체부과**

[별표 5]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제19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

○ ㎥당 원인자부담금

$$= \frac{\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원)}}{\text{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용량}(m^3/\text{일})} \times \alpha$$

▷ α =

$$\left(1 + \frac{\text{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 연평균 생산자물가 상승률}}{100}\right)^n$$

▷ n : 공공하수도 설치 준공 이후의 경과연수

※ 공공하수처리시설〔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에 포함하여 설치한 차집관거(간선관거) 를 포함한다.〕총사업비는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공비 등 총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시·군 내 2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시·군 내 전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6]

분뇨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기준(제27조제1항)

1. 수거식화장실

부과기준	수수료		
	수집·운반	분뇨처리	계
100리터당	997원	111원	1,108원

2.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구 분	수수료		
	수집·운반	분뇨처리	계
100리터당	1,335원	111원	1,446원

※ "수집·운반"은 분뇨의 수집·운반(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경우 청소 포함) 수수료를 말함

※ "분뇨처리"는 분뇨처리시설에의 유입 처리 수수료를 말함

[별표 7]

중수도·하수처리수 재이용수 사용에 따른 하수도사용료 감면기준(제22조제2항)

구분 / 업종	감면비율(%)	
	중수도	재이용수
가 정 용	20	20
일 반 용	20	20
대중탕용	20	20
산 업 용	20	20

주) 감면비율은 공공하수도사용료를 기준으로 감면하는 금액의 비율을 말함

<계산 예>

1. 공공하수도사용료가 100원이고 감면비율이 20%인 경우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는 ?

= 공공하수도 사용료(100원) - 감면액(100원×20%=20원) = 80원 (최종 공공하수도 사용료)

［별지서식］

배수설비 준공검사 신청서(제12조제1항)

설치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시공자	법 인 명					
	성명(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배수설비현황	설치목적	생활오수, 산업폐수, 축산폐수, 기타(　　) 배제				
	설치위치	시·군·구　　읍·면·동　　번지(　통　반)				
	관 종	PVC관, PE관, 흄관, VR관, PC관, 강관, 주철관, 기타				
	관 경	ø ㎜	연장	m	접속방법	(하수관,맨홀,타배수설비,기타)에 접속
	배출수량	㎥/일	※제16조에 의하여 산정된 하수배출량 또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허가된 배출시설의 폐수량을 기입함			

준공검사	검 사 항 목	1차 검사 검사일자 (　.　.　)	보완사항	2차 검사 검사일자 (　.　.　)	비고
	1. 배수설비 연결부 적정시공여부 (누수,지하수침투여부,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 훼손여부, 훼손시 적정복구여부)				
	2. 배수설비 경사도(100분의 1이상)				
	3. 배수설비 관경의 적정성				
	4. 배수설비 재질(내구성,내부식성)				
	5. 오수,우수 분리배관 여부				
	6. 공공하수도,타배수설비와의 오접여부				
	7. 기타 상기 신고사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의 기준 준수여부				
	검 사 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검사자는 검사란에 각 항목에 대한 합격여부를 ○,×로 표시하고 보완해야 할 사항 및 재검사 일자를 명기				

하수도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배수설비 준공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성주군수 귀하

구비서류 : 1. 배수설비 및 접속부분의 설치시공 전·중·후의 사진 각 1식 2. 배수설비 준공도(배수설비와 공공하수도의 연결지점이 나타나는 1/200~1/500 도면)	수수료